

『礪山宋氏十二世系』의 다원적 혈연의식과 사회관계망

權 奇 頭 *

-
- | | |
|-----------------------|------------------|
| 1. 머리말 | 3. 수록 인물의 사회적 지위 |
| 2. 『礪山宋氏十二世系』의 계보적 특성 | 4. 맷음말 |
-

초록: 17세기 양반 관료인 宋熙業이 편찬한 『礪山宋氏十二世系』는 편찬자의 내외 조상을 12개의 가계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개인중심적인 가계기록이다. 12개의 가계는 편찬자의 팔고조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조선전기 가계기록에서 잘 나타나는 다원적 혈연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송희업은 친가인 여산송씨와 외가인 光州[光山]金氏의 족보 편찬에도 관여하고 있었는데, 『십이세계』를 편찬하면서 수집한 계보관련 자료를 다수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씨별 족보를 편찬하면서 異姓의 수록 범위는 매우 축소되었지만, 사회계층적 범위는 확대되어 이제까지 교류가 적었던 지방의 한미한 사족까지도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십이세계』의 혈연관념이 매우 다원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록된 인물의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범위의 다양성이 크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개인적 가계기록과 성씨별 족보의 성격 차이를 잘 보여준다.

편찬자 송희업은 관료로서 크게 성공한 인물은 아니지만, 앞 세대에서부터 왕실과 빈번히 혼인하면서 중앙관인층 사이에 폭넓은 인맥을 쌓아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여러 집안의 족보에 능통한 譜學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인맥과 능력을 바탕으로 송희업은 12개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대체로 京畿 지역에 世居하는 중앙관인층을 수록하는 데에 그치는 한계도 아울러 드러내고 있었다.

핵심어 : 家系記錄, 族譜, 矶山宋氏, 八高祖圖, 中央官人層, 地方士族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礪山宋氏十二世系』(이하 『十二世系』)는 16세기말에 태어나 17세기 중반까지 생존한 인물인 宋熙業(1586~1661)이 1644년(인조 22)에 간행한¹⁾ 家系記錄이다. 이 책은 성씨별로 편집된 일반적인 족보와 달리, 편찬자 송희업을 기준으로 그 직계조상들을 기록한 개인적 가계기록이지만, 목판으로도 印出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1책(청구기호:奎7781)이 소장되어 있다. 서두에 수록된 편찬자 송희업의 본관과 성씨를 따라 ‘礳山宋氏’를 標題로 하고 있지만, ‘十二世系’라는 말처럼 송희업의 內外 조상에 해당하는 12개 家系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성씨가 섞여 있다. 12개 가계는 각각 송희업의 내외 조상 중 한 사람을 起點으로 하여 父系의 直系 조상들과 그 배우자를 기재한 것이다. 이는 특정인의 부계 직계 조상만을 모아놓은 가계기록의 하나인 ‘家牒’(또는 ‘家乘’)²⁾을 여러 개 묶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십이세계』는 족보가 사족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17세기 전반의 가계기록이지만, 족보에 앞서 출현한 초기적인 가계기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사례로 다른 초기적 가계기록과 마찬가지로 현재 실물이 전하고 있는 『四姓綱目』 등을 들 수 있는데,³⁾ 다른 초기적 가계기록과 마찬가지로

1) 본서의 ‘十二世系’ 부분 끝에 기재된 刊記는 ‘歲舍青猴清和下澣 磺城後學 宋熙業 印布’라고 되어 있다. 즉 1644년(青猴: 甲申) 4월(清和) 하순에 간행하여 배포하였다는 의미이다.

2) 작성자 자신의 가계를 직계에 한정하여 밝힌 계보기록을 家乘, 家帖, 家系, 世系 등의 명칭으로 불렸음은 일찍이 宋俊浩, 1987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朝鮮社會史研究』, 일조각, 19면에서 지적한 바 있다. 대체로 시조에서부터 일정 대수까지는 단線으로 이어지다가 작성자의 근친에 이르러 複數의 자손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다(권기석, 2011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태학사, 53-57면).

3) 특정 개인 중심의 초기 가계기록의 대표적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四姓綱目』은 固城李氏 李魯(1544~1598)가 편찬한 것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內外邊 4개 성씨의 선계를 조사하고, 다시 그 후손을 파악하여 정리한 방식이다. 현재 실물이 존재하고, 『십이세계』와 연대가 비슷하면서도 지역적 기반이 다르다는 면에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四姓綱目·春坡心易』(경남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영인본, 2002, 경남문화자료총서 1),

선구적인 계보연구자의 개인 중심적인 가계기록이지만, 개인적인 작업으로서는 매우 많은 인원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씨별 족보의 예비 작업과 같은 성격을 갖기도 했다. 송희업은 1653년(효종 4) 편찬된 『礪山宋氏族譜』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런 점에서 『십이세계』를 17세기 가계기록의 정리와 족보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로 천착해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는 또한 同姓과 異姓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내외손을 제한 없이 수록하는 방식의 조선전기 족보 편집 방식이 점차로 부계 동성 위주로 변화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異姓의 계보를 다수 포함하고자 힘쓴 『십이세계』는 조선전기부터 이어져온 계보의식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주목된다.

『십이세계』는 대개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역대 조상들의 官歷을 충실히 기재하였고, 수록 인물이 포함된 역대 과거합격자 명단을 말미에 첨부하여 관료층 중심의 인맥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다만 宗室 全州李氏와의 혼인이 빈번하게 보이는 것도 이 계보기록의 특색이다. 이 책은 中央官人層 및 왕실 자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혈연 및 혼인관계망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수록 인물의 묘소 위치와 거주지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원창애 解題 참조 :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大東文化研究』 71). 같은 固城李氏의 「內外八寸族譜之圖」(고성이씨 『철성연방집』 수록)는 편찬자 李陸이 1476년에 편찬한 것으로, 편찬자의 조부 李原(1368~1430)의 內外玄孫까지 망라한 內外子孫錄의 일종이다(박홍갑, 2010 「고성이씨 족보 간행과 그 특징」『고성이씨 가문의 인물과 활동』, 일지사). 실물이 전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계보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계보기록도 있다. 『文化柳氏嘉靖譜』를 편찬한 柳希潛이 만든 『柳義興內外八姓族譜』는 편찬자의 내외 팔고조부의 자손을 망라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권기석, 앞의 책, 56면). 恩津宋氏 宋柟壽(1537~1626)가 만든 『恩津宋氏八寸譜』도 유사한 형태인데, 팔고조의 계파를 정리하여 만든 팔촌보이며 수록 인원이 8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권기석, 앞의 책, 70~71면). 『팔성족보』와 『팔촌보』는 내외고조부모를 같이 하는 내외팔촌의 계보를 망라한 형태로서 남녀의 혈연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팔촌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성이씨 李晳(1647~1723)이 제작한 『先世外家族譜』는 역대조상의 배우자가 소속한 성씨의 시조로부터 그 배우자까지의 계보를 정리한 계보를 모아 놓은 것으로(成鳳鉉, 2004 「固城李氏 『先世外家族譜』와 『八高祖圖』檢討」『古文書研究』 24. 『십이세계』와 가장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기록은 '內外譜'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중앙관인충 중심의 계보기록임을 잘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십이세계』는 혈연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앙관인충의 전개 과정과 사회적 연계망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십이세계』가 계보기록으로 보이는 독특한 편집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구한 다원적 혈연의식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송희업이 여산송씨의 성씨별 족보의 편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 중심의 가계기록이 어떻게 족보의 편찬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해 보려 한다. 계보기록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에 이어, 수록 인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송희업의 생애와 활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류와 인맥의 형성 양상을 살펴보고, 『십이세계』 수록 인물의 지역·계층적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가늠해 볼 것이다.

17세기는 조선 사족층 사이에 족보의 편찬이 바야흐로 활성화되는 시기이다. 『십이세계』의 편찬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성씨별 족보의 편찬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십이세계』에 대한 분석은 개인적 가계기록의 편집과 그에 뒤이은 성씨별 족보의 편찬이 혈연의식과 사회적 연계망의 확대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礪山宋氏十二世系』의 계보적 특성

1) 계보의 구조와 다원적 혈연의식

편찬자 송희업은 자가 克家이고 호는 壺隱이며 1586년(선조 19)에 태어나 1661년(현종 2)에 76세로 사망했다. 종4품 掌樂院 剉正이 그의 대표 관직일 정도이고 외직도 군수, 현감, 현령에 그쳐 그리 관료로서 출세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십이세계』에 나타나는 내외 조상들의 관직과 혼인상대를 살펴보면 顯貴한 문벌을 갖춘 가계로 이어져 있다. 특히 宗室 全州李氏와의 혼인이 매우 돋보이는

데, 12개의 세계 중 두 번째인 ‘전주이씨’는 송희업의 증조모 貞順翁主의 직계 조상으로 그 자체가 역대 국왕의 계보인 ‘璿源’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십이세계』에는 전주이씨가 세 번이나 더 나타나는데, 이들은 국왕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효녕대군과 멀지 않은 대수로 연결된다. 첫째 송희업의 조부 宋惟毅의 부인은 동래정씨 鄭大年의 딸인데, 정대년의 부인 全州李氏는 孝寧大君의 5대손이다. 이 경우 전주이씨는 송희업의 외증조모(친조모의 모친)이므로 송희업은 효녕대군의 8대손이 된다. 둘째 송희업의 외조모(光州金氏⁴⁾ 金弘胤의 처) 전주이씨는 효녕대군의 7대손이 되는데, 이 경우도 송희업은 효녕대군의 8대손이다. 셋째 송희업의 외증조부(외조부의 부친) 光州金氏 金克愬의 부인 전주이씨는 효녕대군의 현손(4대손)이 되며, 이 경우 송희업은 효녕대군의 7대손이 된다.

왕실과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최고 수준의 문벌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주이씨를 제외한 다른 가계도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관료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십이세계』에 포함된 인물들 중 편찬자 송희업의 本宗인 여산송씨이거나 여산송씨와 직접적으로 혼인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어떻게 송희업 또는 여산송씨와 혈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려면, 계보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십이세계』는 제목 그대로 12개의 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다. 각 장은 표제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물’을 起點으로 하여, 그 시조까지의 父系 조상과 그 배우자를 單線으로 파악한 것이다. 부계로 직계의 조상을 단선으로 망라한 가계기록인 가첩을 12개 모아 놓은 것이 『십이세계』의 기본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2개의 가첩 중 부계 직계인 ‘여산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중에서 7개는 송희업의 내외조상과 혼인한 여성을 기점으로 하여 그 성씨의 시조까지 소급하는 형태의 가첩이고, 4개는 송희업의 前·後妻 및 前·後妻母를 기점으로 한 같은 형태의 가첩이라는 특색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십이세계』는 특정인의 부

4) 光山金氏와 동일한 성관을 지칭한다. 『십이세계』에는 ‘光州金氏’라 호칭하였으나, 여타의 문헌에는 ‘光山金氏’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계 조상들을 시조까지 소급하여 정리한 가계인 ‘內譜’와 각 세대 조상들의 배우자와 부계 조상들을 정리한 ‘外譜’로 구성된 ‘內外譜’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십이세계』는 부계 직계의 배우자가 아니라 외가의 외가로 이어지는 등 두 차례 이상 다른 성씨로 이어지는 다양한 계통의 배우자의 선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父系線上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外譜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십이세계』는 내외보와 마찬가지로 작성자 개인을 기점으로 하는 가계기록이다. 12개 가계의 기점이 되는 기준인물은 『십이세계』 작성자이자 계보 전체의 기준인물이자 편찬자인 송희업을 중심으로 일정한 혈연관계 또는 인척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이 계보가 송희업 자신의 필요에 따라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인 중심의 가계기록임을 의미한다. 그 구조를 파악하기에 앞서, 12개 가계를 이루고 있는 성관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기로 한다. ①礪山宋氏(本宗), ②全州李氏(璿源⁶⁾), ③東萊鄭氏, ④全州李氏(孝寧大君派1), ⑤光州金氏, ⑥全州李氏(孝寧大君派2), ⑦全州李氏(孝寧大君派3), ⑧平海孫氏, ⑨咸陽呂氏, ⑩泗川睦氏, ⑪新平李氏, ⑫延日鄭氏가 그들이다. 가계는 12개이지만 전주이씨가 4번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성관의 수로만 보면 9개가 된다. 12개 가계 서술의 출발점이 되는 각 성관의 시조, 기준인물과 송희업 사이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5) 宋俊浩는 작성자가 부계의 직계조상을 밝힌 ‘內譜’와 내보에 나타나는 역대조상의 배우자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그 배우자가 소속하는 씨족의 시조로부터 그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内譜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外譜’를 합한 가계기록 형식으로 ‘內外譜’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宋俊浩, 1987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 『朝鮮社會史研究-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研究-』, 19~21면) 본고에서 말하는 ‘內外譜’의 개념은 내외 조상 또는 내외 자손을 망라한 모든 형태의 계보기록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송준호가 제시한 특수한 형태의 계보기록에 국한하였음을 밝혀둔다.
- 6)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에서부터 종종의 딸 정순옹주까지를 수록하고 있어서, 사실상 왕실족보의 일부나 다름이 없다.

〈표 1〉 ‘十二世系’의 내역 및 관계

연 번	姓貫	始祖 (계보상 上限)	기준인물 (계보상 下限)	기준인물과 편찬자(송희업)와의 관계	편찬자의 曾祖世代 인물
①	礪山宋氏	宋惟翊	宋熙業	본인	친증조부 (아버지의 친조부)
②	全州李氏	李翰	정순옹주 (中宗의 딸)	친증조모	친증조모 (아버지의 친조모)
③	東萊鄭氏	鄭繪	동래정씨 (鄭大年的 딸)	친조모	외증조부 (아버지의 외조부)
④	全州李氏	孝寧大君(世宗 이상의 계보 생략)	전주이씨 (李仁弘의 딸)	외증조모(아버지의 외조모)	외증조모 (아버지의 외조모)
⑤	光州金氏	金興光	광주김씨 (金弘胤의 딸)	모친	외증조부 (어머니의 친조부)
⑥	全州李氏	孝寧大君	전주이씨 (李哲수의 딸)	외증조모(어머니의 친조모)	외증조모 (어머니의 친조모)
⑦	全州李氏	孝寧大君	전주이씨 (淑의 딸)	외조모	외증조부 (어머니의 외조부)
⑧	平海孫氏	孫仁亮	평해손씨 (濬의 딸)	외증조모(어머니의 외조모)	외증조모 (어머니의 외조모)
⑨	咸陽呂氏	呂御梅	함양여씨 (祐吉의 딸)	前妻 (前妻父 포함)	-
⑩	泗川睦氏	睦孝基	사천목씨 (從賢의 딸)	前妻母	-
⑪	新平李氏	李德明	신평이씨 (景恒의 딸)	後妻 (後妻父 포함)	-
⑫	延日鄭氏	鄭克儒	연일정씨 (涉의 딸)	後妻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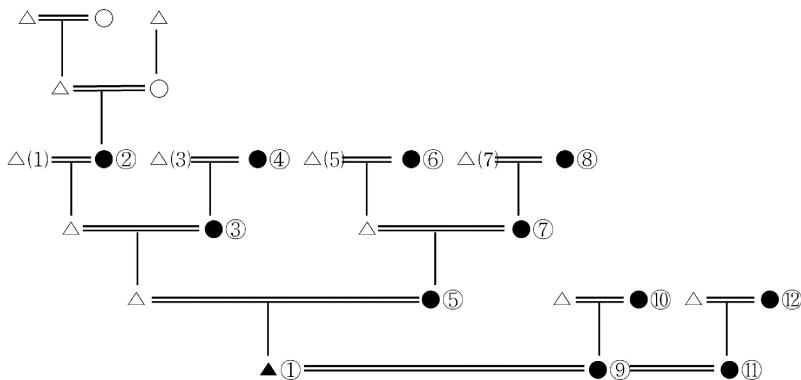
먼저 위 표의 기재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십이세계』에 포함된 12개 가계를 기재 순위에 따라 기록하였고, ‘父系 單線’으로 정리되어 있는 각 가

계의 특성에 따라, 姓貫과 함께 계보상의 上限에 해당하는 始祖와 계보상의 下限에 해당하는 ‘기준인물’을 차례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기준인물과 편찬자 송희업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각 가계에서 송희업의 증조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는데, 증조 세대에 의미를 부여한 까닭은 조금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외증조부나 외증조모는 계보상의 성별에 따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부모 관계를 附記하여 어떤 혈연 계통의 외증조부모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인물은 계보정리의 기준점이 되는데, 편찬자 송희업과 ①번부터 ⑧번까지는 혈연관계로, ⑨번부터 ⑫번까지는 인척관계로 연결된다. ①번 가계 ‘여산송씨’는 편찬자 송희업의 本宗으로서 여산송씨의 시조 송유익부터 송희업 본인까지 父系의 직계조상들과 그 배우자를 최대한 망라해 놓았다. ②번 가계부터는 모두 여성을 기준인물로 삼았다. 송희업의 입장에서 본종 여산송씨가 아닌 他姓으로 계보를 확장하려면 여성은 接點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성혼을 하지 않는 한, 혼인관계로 이어진 여성은 기점으로 하여 성씨가 바뀌기 때문이다.

①번부터 ⑫번까지 기준인물과 송희업의 관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본인-②증조모-③조모-④외증조모(아버지의 외조모)-⑤모친-⑥외증조모(어머니의 친조모)-⑦외조모-⑧외증조모(어머니의 외조모)-⑨전처-⑩전처모-⑪후처-⑫후처모의 순서이다. 언뜻 보아서는 어떤 원칙에 의거하여 기준인물을 선택하고 순서를 부여하여 배치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기준인물의 세대도 송희업 본인-증조부모-조부모-증조부모-부모-증조부모-조부모-증조부모 세대의 순으로 오르내리며 일정하지 않다. 기준 인물의 세대별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십이세계』에 포함된 계보와 기준 인물의 위치를 도표 형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十二世系’ 구조도



범례 : △ 남자, ○ 여자, — 부모-자녀관계, == 혼인관계, ①~⑫ 번호는 [표 1]의 연번이며, () 안에 표시한 번호는 이 번호를 증조부 세대에 적용한 것이다.

아버지를 왼쪽, 어머니를 오른쪽에 두고 기준인물을 표시해 보면, 대체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⑥, ⑧은 편찬자 송희업(①)의 증조부모 세대이고, ③, ⑦은 조부모 세대, ⑤는 부모 세대, ①은 본인으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포 세대가 일정하지 않다.

언뜻 무원칙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증조부 세대의 인물을 기준으로 보면 일정한 질서를 포착할 수 있다. 즉 증조부 세대에서 기준인물로 선정되지 못한 4명의 증조부, 즉 (1)친증조부, (3)외증조부(아버지의 조부), (5)외증조부(어머니의 조부), (7)외증조부(어머니의 외조부)는 실은 아래 세대 기준인물에서 출발하는 계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송희업 본인, ③친조모, ⑤모친, ⑦외조모의 계보는 각각 네 명의 증조부 (1), (3), (5), (7)로 置換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조부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각 世系를 재정리하면, (1)친증조부, (2)친증조모, (3)외증조부(아버지의 외조부), (4)외증조모(아버지의 외조모), (5)외증조부(어머니의 친조부), (6)외증조모(어머니의 친조모), (7)외증조부(어머니의 외조부), (8)외증조모(어머니의 외조모)이 된다. 이것은 곧 8명의 내외증조부모 전원이다. 『십이세계』는 이들의 부계 직계 조상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이 가계기록은 곧 四曾祖

父와 四曾祖母, 합하면 八曾祖父母의 부계 조상을 파악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십이세계』는 증조부모대의 내외조상을 망라한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팔증조부모의 아버지는 바로 팔고조도의 최상단을 구성하는 8명의 高祖父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12세계 중 8개 세계는 바로 팔고조의 성씨별 계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②친증조모의 윗대에 표시한 것과 같이 각각의 팔증조부모의 부계 직계 조상과 그 배우자(배우자의 부친, 즉 妻父)를 시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십이세계』는 팔고조도에 나오는 모든 조상들, 즉 8명의 고조부와 8명의 고조모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십이세계』의 계보 편집 방식이 팔고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본서의 앞뒤에 첨부된 팔고조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본서의 앞부분에는 송희업의 부친 宋圻와 모친 光州金氏의 팔고조도가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는 전처 咸陽呂氏(⑨), 후처 新平李氏(⑪)의 팔고조도가 있다. 앞에 들어간 팔고조도 두 개를 합하면 편찬자 송희업의 ‘十六五代祖圖’가 된다. 여기에는 16명의 5대조부와 16명의 5대조모, 합하여 32명의 5대조부모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십이세계』본문에서 5대조 세대의 祖父들은 모두 파악되는 데 비해서, 5대조 세대의 祖母들은 모두 기록되지는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표 2> 개념도의 ②에 표기한 바와 같이, 증조부 세대의 기준인물로부터 부계 직계 인물만을 추적해서 올라가면서, 부계 인물의 배우자와 그 부친만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증조 세대 기준 인물의 친조부모와 외조부는 알 수 있지만, 외조모는 알 수 없다. 그 결과 고조부모 세대의 모든 인물은 알 수 있지만, 5대조부모 세대로 올라가면 계보상 부분적 공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固城李氏 李晳(1647~1723)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경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先世外家族譜』는 『십이세계』에 가장 근접하는 형태의 가계기록이라 할 수 있다.⁷⁾ 『선세외가족보』는 앞서 언급한 ‘內外譜’의 확장형으로서, 작성

7) 고성이씨의 『先世外家族譜』와 『八高祖圖』에 대해서는, 成鳳鉉, 앞의 논문 참조.

자 이석의 모친, 외조모, 외외증조모(외조모의 모친), 양조모 및 생조모, 양외증조모(양조모의 모친) 및 생외증조모(생조모의 모친), 양증조모 및 생증조모, 양고조모와 생고조모, 생오대조모와 그 모친, 생육대조모를 기점으로 하는 外譜를 모아놓고, 여기에 繼母와 繼外祖母, 처, 처조모, 처외조, 처증조모의 외보도 추가하였다. 8명(생가 및 양가를 합하면 12명)의 내외증조부모의 외보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는 점은 『십이세계』의 계보 구조와 공통되며, 高祖 이상의 세대를 기점으로 하는 외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십이세계』를 능가한다. 그런데 이석의 아들인 李命圭(1672~1768)가 직계 조상들에 대해 작성한 『八高祖圖』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십이세계』에도 작성자 부모의 팔고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견할 만하다. 이러한 공통점은 『선세외가족보』나 『십이세계』의 계보 구조가 팔고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십이세계』와 『선세외가족보』는 공통적으로 편찬자를 기점으로 하여 본인과 妻의 내외 조상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망라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편찬자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上向式의 逆파라미드型 가계기록이면서도,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12개의 가계는 기준인물이 소속된 성관의 시조로부터 시작되는 부계 혈통을 표현하는 성씨별 족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八高祖圖와 같이 개인 중심으로 內外兩邊을 망라하는 전통적인 계보의식과 유교적인 조상중심의 친족관념을 담고 있는 성관별 부계 족보의 계보정리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계보관념은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적인 同姓 위주 족보로의 이행 과정을 예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각각의 성씨별로 정리된 '外譜'들이 확장되면 하나의 姓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족보를 포함한 가계기록에 있어서 계보의 推尋 방향은 편찬자 또는 계보기록상의 기준자를 기점으로 자손에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록하는 '上向式'과 반대로 조상에서 자손으로 내려가며 기록하는 '下向式'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권기석, 앞의 책, 50면). 또 대표적인 하향식의 가계기록인 족보는 한 명의 조상을 기점으로 후손들을 망라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보구조를 갖는데, 『십이세계』는 한 명의 기준인물(편찬자 송희업)을 기점으로 여러 갈래의 조상들을 망라하여 결과적으로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성씨별 족보 편찬과의 연계

『십이세계』는 편찬자 송희업을 기준으로 한 개인 중심의 가계기록이긴 하지만, 방대한 인원이 망라되어 있는데다 시조를 기점으로 하는 부계적인 계보 정리의 방식도 채택하고 있어서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성관별 족보, 즉 ‘姓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보여주고 있었다. 송희업은 1653년(효종 4)에 편찬된 여산송씨의 姓譜『礪山宋氏族譜』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는데, 가까운 시기에 진행된 『십이세계』의 편찬을 통해서 수집된 계보자료가 함께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후술할 바와 같이 『여산송씨족보』는 송희업 이전부터 다수의 편찬자들의 노력으로 증보되어온 결과물이었고, 송희업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개인이 하나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십이세계』가 곧 『여산송씨족보』의 예비 작업물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두 계보기록의 작성에서 모두 송희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현존하는 『여산송씨족보』는 여산송씨 종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경기유형문화재 1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1606년(선조 39)에 宋言愼(1542~1612)이 편찬을 시작하여 1610년(광해군 2)에 宋駟(1557~1640)이 청주에서 1책으로 간행하였고, 그 뒤 1653년(효종 4)에 송희업이 이를 보완하여 상하 2책 226장으로 편찬하고 간행한 것이다. 이 족보의 구성을 보면 본편 외에 追錄 2권이 있으며, 시조 宋惟翊 이하로 19대까지 한 면을 6칸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편자 송희업은 시조 후 17世孫이므로 그로부터 2세대 정도를 더 수록한 셈이다.

계보 기록 방식은 친손과 외손을 크게 구별하지 않는 조선전기 족보의 특성을 상당히 보존하고 있는데, 婦庶는 구분한 반면에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출생순으로 기재하였으며, 딸의 후손인 외손도 4대까지 수록해 놓았다. 조선후기 족보에서 빈번히 보이는 양자 입양 사실도 시기적으로 17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하는 14대 이 후부터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⁹⁾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여산송씨족보」,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웹서비스 <http://terms.naver.com>)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판본인 1664년본(현종 5) 『礪山宋氏世譜』가 소장되어 있다.¹⁰⁾ 이 책도 1653년본과 같이 上下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興陽(지금의 전남 고흥)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 족보에 실린 서문과跋문 등은 修譜의 이력을 상세히 밝혀 놓았는데, 1655년에 송희업이 쓴 追記와 1664년에 宋磐이 쓴 서문 이외에는 모두 1653년본 이전의 편찬 이력에 관한 것이다.¹¹⁾ 본 논문에서는 이 판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산송씨의 족보 편찬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문과跋문 등에 언급된 상세한 수보의 이력을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원래 송언신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보첩이 있었으나, 왜란을 겪으면서 보첩을 잃어버렸다. 전란이 끝난 이후에 송언신은 宋元慶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보첩을 얻었는데, 故人이 많았고 異姓에게 상세했다고 한다. 송언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송씨들에게서 先系를 물어보고 자료수집을 한 결과, 1606년(선조 39)에 ‘同宗盛牒’이라 불리는 족보를 편찬해냈다.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송언신은 단순히 족보의 복원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異姓이 다수 포함되는 조선전기 内外孫 綜合譜의 방식에서 부계 중심의 同姓譜로 재편집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송언신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서 기록한 것이 淚沒될 것을 두려워하여 간행을 시도하였다.¹²⁾ 그 결과 1610년 宋駟이 西原(淸州)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간행이 이루어졌고 분량은 1책에 그쳤다.¹³⁾ 송일은 1653년본 서문을 쓴 宋時吉의 부친이기도 하다.

1610년본 족보의 보완은 송희업이 주도하였다. 그는 송언신이 편집한 ‘2世’ 아래

10) 『礪山宋氏世譜』(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2518-39-67)

11) 본서에 실린 序·跋文 및 追記 등 간행경위를 밝힌 글은 총 5개가 있는데, 필자와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서문1, 「礪山宋氏世譜序」, 宋言愼 序, 1606년(선조 39) ; 서문2, 「礪山宋氏族譜序」, 呂爾徵 記, 1651년(효종 2) ; 서문3, 宋時吉 記, 1653년(효종 4) ;跋文, 宋熙業 跋, 1652년(효종 3) ; 추기, 宋熙業 追記, 1655년(효종 6) ; 서문4, 宋磐 記, 1664년(감진)

12) 『礪山宋氏世譜』, 1606년 宋言愼 서문.

13) 『여산송씨세보』, 1653년 宋時吉 서문.

에 두 세대를 다시 더하여 기록하면서 늘어난 분량을 담기 위해서 책을 상하권으로 분리하였다. 부계 중심의 편집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외손의 수록범위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였는데, 딸의 증손과 현손까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송희업이 쓴 발문은 1652년(효종 3)에 작성되었지만, 실제 간행 시기는 이듬해인 1653년(효종 4)으로 확인된다.¹⁴⁾ 앞서 언급한 여산송씨 종회 소장본은 이 판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송희업의 작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송희업이 간행 작업을 마무리하는 동안 추가로 입록을 원하는 宋嵩 및 宋重器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송승의 자손은 전라도 興陽(전남 고흥군 지역의 옛 지명)에 世居하고 있었다. 이들은 1610년 송언신의 간행 당시에는 근거할 바가 없어서 수록되지 못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자신의 세계를 ‘書送’하였으나, 간행하는 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였을 뿐 아니라 판자를 구할 재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本譜에 실리지 못하고 追記의 형태로 족보 말미에 수록하였다.¹⁵⁾ 외견상 계보미상자에 대한 조치인 別譜와 유사하지만,¹⁶⁾ 여기서는 계보 관계가 알려져 있는 인물을 뒤늦게 수록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1664년 완성본 족보가 나올 때는 本譜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송희업의 追記는 이전까지 중앙관인 중심의 개인적 계보정리를 통해 편찬되던 족보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사족까지 수록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례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족보는 편찬자가 일방적으로 계보자료를 수집하여 족보를 완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수록희망자가 자신의 계보를 서신의 형태로 적극 수록하고자 노력한 점은, 조선후기에 입록희망자들이 修譜를 위한 單子를 제출하는 방식의 초기적 형태라고 평가할 만하다.

1664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최종적인 완성은 같은 해 작성된 宋磐의 서문

14) 『여산송씨세보』, 1655년 宋熙業 追記 : 1664년 宋磐 서문.

15) 『여산송씨세보』, 1655년 宋熙業 추기 : 1664년 宋磐 서문.

16) 別譜의 계보와 입록 원칙에 대해서는 權奇奭, 2010 「조선시대 族譜의 入錄階層 확대와 한계-凡例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5, 162~167면 참조.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宋磐은 흥양 출신 사족으로서 이전까지 수보를 주도하던 송언신, 송일, 송시길, 송희업 등이 서울 근교에 기반을 둔 중앙관인 출신이었던 것과는 차별화된다. 이는 1664년본 족보에 실려 있는 실려있는 수보 참여 인물들의 계보도인 <부표 1>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부표 1>을 통해 수보 참여자들의 혈연적 거리와 근거 지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언신은 송희업에게 18촌 조부 항렬이 된다. 송언신의 8대조 仁蕃이 송희업의 10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송일과 송시길 父子은 송희업에게 각각 17촌 숙부와 18촌 형제 항렬이다. 송일의 8대조 祖는 송희업의 9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송희업이 편집한 족보의 서문을 작성한 여이징은 외손을 4대에 한하여 수록하는 규정 때문에 실리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선조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서문을 쓴다고 밝혔다. 족보에는 고조부 呂世琛까지 실려 있는데, 그도 여산송씨의 직접적인 외손이 아니고, 조부 呂忠輔가 康晉의 사위이고, 장진은 또 송명산의 사위가 됨으로써 송씨와 연결되는 것이다. 송희업과 여이징의 촌수를 따져보면, 22촌 형제간이 된다.

이처럼 족보의 주요참여자들은 대단히 먼 촌수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지만 이들은 지역적으로 경기 지역에 근거를 둔 관료 가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족보에 나타난 官歷과 묘소의 위치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초기에 족보 간행에 첨여한 송언신의 선대 묘소를 추적해 보면, 여산의 향리였던 시조(惟翊)의 묘소는 矶山에 있었다가, 중앙 조정에 진출한 이후에는 長湍에 묘소를 두었다(松禮, 瑞). 조선왕조 개창을 전후하여 충청도 連山과 전라도 泰仁으로 이동한 이후로는(社, 辰生, 有徵, 觀),¹⁷⁾ 다시 경기 지역인 廣州에 묘소를 두고 있는 것(壽, 末塚, 墓)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관직을 살펴보면, 대대로 문신 관료를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십이세계』의 편찬자이기도 한 송희업의 선계도

17) 여산송씨 가계는 고려말 조선초를 전후하여 충청도 연산, 진잠이나 전라도 태인 등에 묘소를 둔 인물들이 보인다. 하지만 중앙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경기 지역에 묘소를 두는 양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방사족으로의 낙향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보인다.

비슷한 양상이다. 송언신과 가계가 갈라지는 辰生 이후로 경기도 楊州에 세장지를 두고 있으며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과 통혼이 가능할 정도의 가세를 유지하였다. 송일과 송시길의 가계도 경기 지역에 묘소를 둔 관료 가문이라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1664년 완성본의 작업을 책임지고 서문도 쓴 송반은 이전의 참여자들과 더욱 춘수가 멀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근거지도 다르다. 그는 송희업이 1653년에 족보를 간행할 당시 뒤늦게 참여한 송승의 자손 중 한 사람이다. 송희업과 송반은 28촌간으로 송희업이 두 세대 위가 된다. 두 사람의 공통 조상인 송송례는 시조 후 4世(시조의 증손) 밖에 되지 않아 계보상 최상대 인물에 해당할 정도로 두 사람의 혈연적 거리는 멀다.

또한 <부표 1>을 통해서 송반의 가계는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이 대체로 부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조후 11世 侃 아래로 19世 磐에 이르기까지 9세대에 걸쳐서 역대의 묘소가 興陽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조상들은 거의 족보상 관직이 기재되지 않다가, 반의 고조부인 玉衡부터 현감, 水使, 主簿 등을 지내고 武科를 한 인물들이 확인된다. 지방에 근거를 두면서 관직 진출이 부진한 在鄉士族의 한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그는 앞서 족보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 보다 한층 더 윗세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거리도 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송승의 자손과 같은 시기에 추가 입록된 송중기 가계의 거주지와 관직 진출 추세가 어떠했는지도 비교해서 검토할 만한 문제이다. 송중기의 부친과 조부는 모두 楊州에 묘소를 두고 있고 武科 兵使 등을 지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앙관 인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왜 초기 족보의 편찬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송희업은 1655년 追記를 작성한 이후에도 완전한 초고를 작성하여 간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병도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송반에게 초고를 맡기고 간행을 부탁하였다. 송반은 초고를 종족에게 보여주고 재력을 모아 경영하려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간행이 성사되었으며

송희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 족보에는 송희업이 초고에서 기록되지 못한 자손 2대가 추가되었다.¹⁸⁾ 권말의 刊記에 따르면, 興陽에서 약간의 책을 간행한 뒤에 서울로 올려보내고, 이어서 본관인 磠山 月峯寺에 보내 보관하며 널리 배포하기를 기대하고자 했다.

1664년 최종본에는 1653년본에 수록된 追記와는 다른 새로운 ‘追錄’이 첨부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追錄은 상권과 하권에 모두 실려 있는데, 그 인원 구성이 약간 다르다. 상권의 추록에는 宋萬連, 宋濯, 宋三麻, 宋凱鵬을 起頭로 하여 그 자손들을 기재하고 있는 데 비하여, 하권의 추록은 宋萬連, 宋議, 宋濯, 宋三麻을 기두로 하여 宋凱鵬이 빠진 대신에 宋議가 새로 들어갔으며, 송만련 후손의 계보가 상권에 비하여 더 상세해졌다. 아마도 하권의 추록이 나중에 작성하면서 조금 더 증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록에는 註釋이 달려 있어서 수록의 전말을 알 수 있다. 추록에 실려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본관이 여산으로서 興陽에 거주한 사람들인데, 혹은 병란으로 인하여 먼 지역으로 遊離하고, 혹은 여러 대에 걸쳐 早沒하는 바람에 자손이 겨우 존속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족보를 간행한다는 말을 듣고, 입록에 참여하기를 청했으나 어느 파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여 알려진 계보만을 뒤에 붙여놓았다. 1653년 본 추기와 1664년 추록은 모두 흥양 출신 동성을 뒤늦게 수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시조로부터의 정확한 계보를 알고 있으나 계보 제출이 늦어져 권말에 부기된 것에 비하여, 후자는 계대 자체가 불분명한 동족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족보 참여 계층이 점차로 한미한 계층으로 확대되어가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서문과 함께 족보 편집상의 규정을 정리한 ‘범례’가 수록되어 있어서, 족보 편집의 기준과 편찬자들의 계보 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 범례는 1651년에 작성된 呂爾徵의 서문 바로 뒤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53년 송희업 간행본 당시에 정리된 범례로 생각된다. 범례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본종 곧 同姓에 대한 배려이다. 본종은 성을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의 생애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는데 비

18) 『여산송씨세보』, 1664년 宋磐 서문.

하여, 異姓의 기재 범위는 4세로 제한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성을 무제한 수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정력이 유한하고 견문이 부족하다’고 하며 애써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성의 수록을 당연시하던 당시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사위에게 前·後室 여부를 기재하여 사위의 자녀가 송씨의 외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 入譜된 자는 한 곳에서만 상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다른 곳에서는 참조 표시만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같은 인물도 남녀를 포함하는 複數의 계보를 통해 여러 곳에 수록될 수 있는 초기족보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면모도 보인다. 紙頭에 각파의 명칭을 써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는 족보와 문중의 외연 확대에 따라 派가 형성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송희업의 『십이세계』가 조선후기 姓譜의 요소를 다분히 보이고 있는 것처럼, 1610년부터 1664년까지 꾸준히 증보되면서 거듭 간행된 『礪山宋氏世譜』는 동성보를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內外孫 綜合譜의 특징을 온존하고 있는 면도 나타난다. 이는 송희업의 『십이세계』가 다원적인 혈연관념을 추구하면서도 성씨별 시조까지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과 같이 동성보의 특성을 함께 보이는 것과 비교할만 하다. 두 가계기록이 성씨별 족보와 개인 중심 가계기록이라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지만, 송희업이 참여한 1653년본 여산송씨 족보와 송희업이 1644년에 간행한 『십이세계』 사이에는 10년의 시차도 채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두 가계기록은 계보를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달랐지만, 계보의식의 현격한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즉 개인적 가계기록도 동성 중심의 계보관념을 내포하고 있고, 성씨별 족보도 외손도 같은 조상에서 나온 자손의 한 갈래라는 인식을 담고 있었다. 조선시대 족보가 완전히 부계 자손만의 가계기록이 되는 것은 19세기 이후로 추정되며, 18세기까지도 제한적으로 외손을 수록한 족보의 예를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19) 17세기에 동성 위주의 수보 원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외손을 일정 범위까지 수록한 족보의 예를 흔히 찾을 수 있으며(권기석, 『족보와 조선사회』, 2011, 태학사, 166~183면), 18세기 안동권씨 역대 족보의 경우 1701년 『辛巳譜』에서는 曾孫까지, 1734년 『甲寅譜』와

17세기까지의 가계기록이 담고 있었던 多元的인 혈연관념은, 한 인물이 여러 성씨의 족보 편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萬基(1633~1687)의 문집 『瑞石先生集』에 실려 있는 「光山金氏族譜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생각건대 우리 김씨 족보는 종인으로서 嶺南에 거주하는 자와 우리 집안에서 나온 군수 송희업씨가 아울러 편찬한 바가 있는데, 열람하니 歷年이 이미 오래되었고, 支派가 날로 불어난 것을 아직 이어서 편찬하지 못하니 闕漏된 것이 放失되어 거의 상고하지 못하였다. 내가 이를 두려워하여 두 족보를 따라서 그 差誤된 것을 바로잡고 그 편찬하지 못한 것을 增修하였는데 그 夾註의 사실이 혹은 갖추어지고 혹은 소략한 것은 同宗과 外裔의 구별이다. 本派에 더욱 상세한 것은 내가 만드는 족보인 까닭이다. 외예는 비록 십백세에 이르더라도 모두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문경과 정력이 두루 미치고 거론할 수 없음이 있으니 요약하고 정밀하게 하는 것만 못하고, 두 족보에서 3세를 한 계로 한 것은 또한 근거할 만한 바가 없는 까닭에 지금은 상복이 미치는 바를 쫓아서 여자의 자식을 한계로 삼았으니 이것이 우리 新譜의 범례이다.²⁰⁾

김만기의 주도로 1667년(숙종 3)에 광산김씨 족보가 편찬되기에 앞서서 이미 영남에 거주하는 광산김씨 종인과 송희업이 편찬한 두 種의 족보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정식으로 성씨별 족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편찬된 족보의 草稿라고 할 수 있는 '草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²¹⁾ 김만기는 肅宗妃 仁敬王后 김씨의 부친으로 光城府院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십이세계』에도 송희업의 모친 光州金氏를 통해 광산김씨의 가계가 나온다. 광산김씨 가계를 통한 송희업과 김만기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794년 『後甲寅譜』에서는 外孫(딸의 자식)까지 수록하고 있어서 외손 수록의 전통이 18세기까지도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필자 소장 『後甲寅譜』 복사본, 「凡例」 참조).

20) 『瑞石先生集』 권5 序, 「光山金氏族譜序」 “惟我金氏族譜 宗人之居嶺南者暨我出郡守宋熙業氏 並有所編纂 而閱歷年歲既久 支派之日滋衍者 未之續編 闕漏放失 殆不可考 余爲是懼 就兩譜 是正其差謬 增修其未續編者 而其夾註事實之或備或略 同宗外裔之別也 尤詳於本派 譜自我作故也 外裔 雖至十百世 皆爲我出 而聞見精力之有不能周及而遍舉也 則無寧約而精也 而兩譜三世之限 又無所執據 故今從喪服所暨 限以女子之子 此吾新譜之凡例也”

21) 미간행족보를 의미하는 '草譜'의 개념에 대해서는 권기석, 앞의 책, 58~59면 참조.

〈표 3〉 김만기와 송희업의 관계도

金萬基—益謙—槃—長生—繼輝—鎬—宗胤—克忸—國光—鐵山
 宋熙業—(사위)宋圻—弘胤—謙光—克福—謙光—

혈연관계의 거리를 촌수로 따지면 15촌 관계가 될 정도로 그다지 긴밀한 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산김씨는 송희업에게 바로 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족보를 따로 편찬할 정도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송희업이 폐낸 광산김씨 족보에는 물론 송희업 자신도 외손의 한 사람으로 수록되었을 것이다. 송희업과 영남 종인이 만든 두 草譜에는 딸의 후손도 3세대에 한하여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만기는 이 ‘3세대’라는 기준을 둔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服喪 범위를 따라야 하며, 聞見과 정력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록 범위를 딸의 자식, 즉 2세대로 축소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손도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고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수록한 것은 同姓만의 족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외손에 대한 배려를 유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송희업이 관여한 『여산송씨족보』와 『광산김씨족보』 모두 『십이세계』를 참고문헌으로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십이세계』에서 파악한 계보를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십이세계』에서 성관별 시조에서 출발하여 송희업까지 이어지는 직계 계보를 파악하면서 여산송씨와 광산김씨의 ‘가첩’을 각각 작성한 바 있다. 두 족보는 송희업과 성관 시조 사이의 직계만을 정리한 가첩을 확장하여, 같은 시조를 공유하는 방계 후손까지 포괄한 종합 족보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십이세계』는 당시의 여러 유력성관 족보 편찬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송희업의 인맥과 수록된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3. 수록 인물의 사회적 지위

송희업 본인은 관료로서 크게 현달한 인물은 아니지만, 가문 배경으로 보면 당시의 일급 양반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십이세계』에 나타난 내외 조상이 모두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 관료를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마와 종친들도 여럿 계보선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송희업의 관력과 행적을 통해 그의 인맥을 알아보고, 『십이세계』에 수록된 内外先系 조상들의 지역적·계층적 특색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편찬자 송희업의 인맥

송희업은 학술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아니지만, 風玉軒 趙守倫(1555~1612)에게 수학한 것으로 전해진다.²²⁾ 조수륜은 牛溪 成渾의 제자이므로, 이를 통해 미루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西人 계열의 학파에 속하는 인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수륜이 獄死한 逆獄이 일어난 1612년(광해군 4)에 그는 역적 閔卓을 추적하여 체포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하여 동반 6품의 실직에 제수하라는 명을 받고 3등 공신에 녹공되었다.²³⁾ 1616년(광해군 8)에는 실제로 朔寧郡守로 제수되기도 하여²⁴⁾ 그의 정치적 浮沈은 스승 조수륜과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모순점 때문인지 그의 묘갈명을 쓴 송시열은 ‘그가 이때 상훈을 받아 통정대부까지 加資된 것을 깊이 부끄러워하였다’는 해명의 언급을 넣기도 했다.²⁵⁾

22) 『宋子大全』 권176, 墓碣, 「掌樂院僉正贈左贊成壺城君宋公墓碣銘 幷序」 “公諱熙業 字克家 生有異質 見者皆稱其稱家兒 稍長 就學風玉軒趙公守倫 風玉牛溪成先生高弟也”

23) 『光海君日記』 54권, 4년(1612) 6월 辛巳(18일) : 같은 책, 4년(1612) 6월 庚寅(27일). 역적 閔卓을 처음 체포할 때, 송희업이 심력을 다해 지휘하고 그의 종 山潤이 사력을 내 결박하자 봇신[夫叱神]이 함께 가 도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송희업은 동반 6품의 실직을 제수받고, 산윤과 봇신은 면천하는 것으로 論賞되었다.

24) 『光海君日記』 106권, 8년(1616) 8월 辛亥(13일).

25)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光海壬子起大獄 跡逃命人 至公女僕家 時毫毛連累者家立碎公懼及 以計捕告 賞加通政 公深恥之 力辭不得 歷西樞 連拜朔寧 丹陽二郡守” 이 글에는

광해군 시기 송희업이 특정한 黨色에 국한하지 않고, 두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있다. 1616년에 진사 閣藻이 유출된 과거 시험 문제의 답을 얻고자 尹善道(1587~1671)에게 『事文類聚』를 빌려가려고 하자 윤선도가 이를 상소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민심은 송희업의 편지를 가지고 윤선도에게 찾아갔다고 한다.²⁶⁾ 민심은 대북의 영수인 李爾瞻(1560~1623)의 당여로 간주되는 인물이고, 윤선도는 남인인데 송희업은 이들 모두와 인연이 닿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인해 그가 광해군 재위시에 받은 포상도 削勳되었다. 그러나 선조의 왕자 仁興君(1604~1651)의 장인이었던 점을 고려하였는지, 인조대 이후에도 그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었다. 1629년에는 왕자 부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6품 실직이 제수되었다.²⁷⁾ 송시열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인조 초년의 침체기 당시의 명류들과 시를 주고받았는데, 인조가 그에게 다시 관직을 준 것도 이 시기 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⁸⁾ 1630년에는 대군 부인의 간택에 떨어 후보로 들어가기도 했다.²⁹⁾ 그는 인조대에 금부도사,³⁰⁾ 金城縣令,³¹⁾ 장악원 첨정³²⁾ 등을 차례로 지냈다.

인조대에는 서인 계열 인사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그가 간성현감으로 재임할 때(1637년 이전으로 추정), 전임 현감인 澤堂 李植이 지으려

1612년의 옥사 때 도망한 사람이 송희업의 여종의 집에 이르게 되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잡아 고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26) 『光海君日記』 110권, 8년(1616) 12월 丁巳(21일).

27) 『承政院日記』 인조 7년(1629), 11월 25일(丙午) “傳曰 宋熙業 以王子夫人之父 降資之後 還爲學生 至今沈置 殊甚不可 六品實職除授”

28)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仁祖卽位 盡削光海朝勳籍 公家食松楸下 一時勝流皆作詩以詠之 上亦察公心 又公連姻王室 以舊例受職 自刑曹佐郎 遷敍爲杆城縣監”

29) 『凝川日錄』 권4, 庚午年(1630, 인조 8) 上, 9월 28일 備忘記 “二十八日備忘 初揀擇處女 沈器遠張維鄭廣敬金光炫黃灑金南重金光燦趙緯韓宋熙業尹善道金炯金光燦等女子禁婚”

30) 『承政院日記』 인조 15년(1637) 8월 8일(癸卯)

31) 『承政院日記』 인조 16년(1638) 1월 11일(乙亥)

32) 『承政院日記』 인조 23년(1645) 11월 23일(辛未)

던 정자를 이어서 지은 것을 기념한 시문이 있다.³³⁾ 그는 또한 스승 조수륜의 아들 滄江 趙漣과 교유하였고, 조수륜의 외손자인 관찰사 李弘淵과 교류하였다.³⁴⁾ 그러나 1647년(인조 25) 말부터 이듬해 초에 있었던 관료들의 이른바 ‘關節’, 즉 뇌물 거래를 폭로한 사건으로 벼슬길이 침체되었다.³⁵⁾ 송희업은 고양군수로서 朝士들이 분분하게 干請하면서 서찰을 보내는 폐단을 싫어하여 조정에 傳聞하니, 국왕 인조가 그에게 간청한 사람을 모두 고하게 한 사건이었다. 송희업이 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사위인 인홍군 李瑛까지 포함되기도 하였으나,³⁶⁾ 그가 간청한 사람들을 보고할 때 취사에 사사로운 듯을 두고 겨우 8인을 발고하는 데 그쳤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推問하라는 간원의 요구가 이어졌다.³⁷⁾ 이후에도 漢城府 判官이나 掌樂院 司議 등의 관직이 제수되지만, 대체로 취임하지 않았다. 송시열의 해명에 따르면, 우연히 감사와 이야기하다가 관절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감사가 이를 조정에 보고한 것이 일의 발단이었다고 한다.³⁸⁾

이 ‘관절’ 사건은 그가 관료사회에서 쌓은 인맥을 잘 보여준다. 후대의 논평이 긴

33) 『澤堂集』 권5, 詩, 「蓮亭十絕句」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다. “池在杆城內 余爲開鑿 擬於其中作亭 築土作草茨以處 瓦屋二間材料工費盡具 以待春和 遷遜歸 以其材付交代宋熙業 宋遷基于西岸而作云”

34)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惟風玉公胤子滄江公漣論人甚不苟 獨於公亟稱之 今其姊氏子 李觀察弘淵 故耳熟而公誦焉”

35) 이 사건과 관련된 『승정원일기』와 실록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1648) 1월 12일(戊申), 14일(庚戌), 15일(辛亥), 16일(壬子), 17일(癸丑), 18일(甲寅), 19일(乙卯), 20일(丙辰), 21일(丁巳), 22일(戊午), 23일(己未), 24일(庚申), 25일(辛酉), 26일(壬戌), 27일(癸亥), 28일(甲子), 2월 5일(庚午) ; 『인조실록』 48권, 25년(1647) 12월 丙戌(20일) ; 『인조실록』 49권, 26년(1648) 1월 丙午(10일), 戊申(12일), 辛亥(15일), 癸丑(17일).

36) 『인조실록』 49권, 26년(1648) 1월 丙午(10일)

37) 『인조실록』 49권, 26년(1648) 1월 戊申(12일), 辛亥(15일). 송희업이 발고한 8인은 仁興君 李瑛, 右尹 鄭良弼, 護軍 安獻徵, 司直 李元鎮·李溫, 修撰 金佐明, 司果 尹益元, 司正 宋時喆이었다.

38)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俄拜高陽郡守 與監司語 偶及關節弊 監司聞於朝遂究覈其人 公不得已以實對朝紳數人 因是獲譴 公不自安 雖遷安山郡守而不敢赴 久後 上曰 宋熙業一忤於人而不起廢 世道可駭 於是除漢城府判官 改掌隸院司議 痘不仕”

하지만, ‘송희업이 고양군수로 있으면서 일을 폭로하여 이름 있는 재상들이 많이 죄를 당했고, 그 때문에 다시 벼슬길이 트이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는데,³⁹⁾ 실제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조정의 고관들이 많았고, 송희업은 임금의 뜻은 어느 정도 만족시킨 반면에 조정 신료들의 큰 반발을 샀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취사 선택하여 보고했다는 신하들의 공박과 ‘말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임금의 반박이 이를 잘 보여준다.⁴⁰⁾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송희업은 조정의 대신들의 비리를 대거 발견하고 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중앙관료층 사이의 인맥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중앙관료사회 중심의 친목 활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同庚契議序」가 있다. 이 서문은 1553년에 태어나 동갑이 된 20여인이 만든 契의 구성원이 51세가 되는 1603년(선조 36)에 계원의 한 사람인 李好閔(1553~1634)이 작성한 것이다.⁴¹⁾ 송희업의 아버지 宋圻도 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서문이 쓰여 있던 契冊의 글씨를 썼다. 송희업은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계책을 발견하고 1648년(인조 26)에 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오래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계원의 자손들끼리 世厚의 의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을 밝혔다.⁴²⁾ 이를 통해서 그의 인맥이 중앙관료층의 여러 세대에 걸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송희업은 계보 편집을 위한 기초자료를 다수 수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지은 묘갈명에 따르면, 그는 소설과 서첩 수집에 힘쓰고 도장 새기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⁴³⁾ 이렇게 그는 博覽廣記하는 장

39) 『현종실록』 2권, 1년(1660) 5월 丁丑(23일)

40) 『인조실록』 49권, 26년(1648) 1월 辛亥(15일)

41) 『禾谷集』 권3, 「同庚契議序」.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의 이름(관직)은 다음과 같다. 李好閔(禮判), 鄭賜湖(刑判), 金信元(兵判), 權恢(承旨), 李純信, 李慶涵(判尹), 崔沂(監司), 宋圻(僉知), 趙希輔(翰林), 申應策(承旨), 高尚顏(郡守), 沈宗忱(縣監), 李執中, 鄭默(翰林), 郭止善(正郎), 崔光弼(禮正), 朴孝男(佐郎), 金孝男, 趙浩, 李真彥.

42) 『禾谷集』 권3, 앞의 글 “癸丑生甲契冊 乃先君自筆也 藏諸篋笥者久矣 若累經歲月 則恐或有遺失之患 今之入梓 不徒欲爲流傳不朽 且與契中諸丈之子孫 印出披覽 知世厚之義也”

43)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以至東方小說暨書帖之流 採摭成帙 聞人有僻書奧文者 必重購以致之 又深於篆籀 所刻圖章 妙絕無倫”

서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남다른 계보 정리가 가능할 정도의 자료나 정보도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여러 집안의 족보에 능통한 譜學의 대가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계보에 관하여 상담하고자 찾은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다.⁴⁴⁾ 本宗인 여산송씨 족보와 外家 광산김씨 족보의 편찬도 이러한 譜學者로서의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호를 지으면서 관향인 矶山의 별칭인 ‘壺山’을 응용하여 지은 것은 그가 보학에 쏟은 관심과 열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⁴⁵⁾

(2) 수록 인물의 지역·계층적 분포 양상

『십이세계』의 수록 인물은 조선전기는 물론이고, 대개는 고려시대까지도 소급되는 중앙관료층의 가계로 구성되어 있다. 『십이세계』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榜目에는 계보상에 보이는 인물들이 다수 첨부되어 있는데, 과거 시행 연도별로 수록 인물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십이세계』 첨부 방목에 나오는 계보 수록 인물

명칭	시행 연도	『십이세계』 수록인물	등급	전직	계보상 위치
正統辛酉式年	1441년 (세종 23)	梁誠之	乙科2인	新生	①여산송씨 12세 軼의 妻祖父 ④전주이씨 4세 粹의 처조부
		金國光	丙科4인	生員	⑤광주김씨 11세 鐵山의 장남
		崔洧	丁科5인	陵直	⑪신평이씨 11세 欽碩의 妻父
景泰癸酉式年	1453년 (단종 1)	金性源	丙科7인	新生	⑨함양여씨 15세 世琛의 처조부
		金謙光	丁科3인	敎導	④전주이씨 5세 仁弘의 처조부 ⑤광주김씨 12세 謙光 본인

44)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又服程 張夫子之訓 以爲收宗族厚風俗 必以明譜牒爲先 故凡族姓書無不搜羅 聯爲巨編者累十 故踵門叩問者相繼 公輒剖析響答 無不滿意而歸”

45) 『宋子大全』 권176, 앞의 글 “公嘗自號壺隱 廿以氏出壺山而亦仍託於沈冥耶”

同年別試	1453년 (단종 1)	孫舜孝	乙科2인	生員	⑧평해손씨 6세 舜孝 본인
		李承胤	丁科29인	判官	⑥전주이씨 3세 哲全의 장남
天順丁丑重試	1457년 (세조 8)	孫舜孝	丁科10인	監察	앞에서 나옴
成化丙戌拔英試	1466년 (세조 12)	鄭蘭宗	二等3인	同副	⑪신평이씨 14세 文殷의 처증조부
		梁誠之	二等12인	大憲	앞에서 나옴
		金禮蒙	三等15인	嘉善	⑨함양여씨 15세 世琛의 처증조부
		金性源	三等21인	判官	앞에서 나옴
成化丁酉謁聖	1477년 (성종 8)	宋軼	乙科1인	進士	①여산송씨 12세 軼 본인
成化壬寅進賢試	1482년 (성종 13)	宋軼	二等1인	弘博	앞에서 나옴
弘治甲寅別試	1494년 (성종 25)	南袞	乙科1인	生員	①여산송씨 13세 之翰의 妻父
弘治戊午式年	1498년 (연산군 4)	金克福	三等22인	進士	⑤광주김씨 13세 克福 본인 ⑥전주이씨 3세 哲全의 사위
正德己巳別試	1509년 (중종 4)	鄭荃	乙科4인	生員	③동래정씨 17세 荩 본인
嘉靖丙戌別試	1526년 (중종 21)	金弘胤	甲科1인	生員	①여산송씨 16세 坎의 처부 ⑤광주김씨 14세 弘胤 본인 ⑦전주이씨 6세 淑의 사위
嘉靖壬辰庭試	1532년 (중종 27)	鄭大年	甲科1인	生員	①여산송씨 15세 惟毅의 처부 ③동래정씨 18세 大年 본인 ④전주이씨 5세 仁弘의 사위
萬曆丙子司馬榜	1576년 (선조 9)	宋圻	進士二等	別提	①여산송씨 16세 圉 본인 ⑤광주김씨 14세 弘胤의 사위
萬曆癸未別試	1583년 (선조 16)	宋圻	丙科26인	直長	앞에서 나옴

총 13회의 시험에서 수록 인물이 합격한 것은 21건이 확인된다. 21건 가운데 동일인을 제외하면 16명이며, 『십이세계』 계보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두 곳 이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中央官人層의 중첩된 혼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김홍윤과 정대년의 예에서 보이듯 성씨별 世系의 연결점을 이루는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목의 첨부는 편자 송희업이 자신의 내외조상을 열거하고, 그들이 포함된 과거 합격 목록을 첨부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관료층 내에서의 인맥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同榜, 또는 同年은 조선시대 관료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인맥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송희업은 관료로서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으나, 관료사회 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송희업의 증조부 宋寅이 중종의 부마이고 사위가 선조의 왕자 仁興君 瑛이었던 사실에서 드러나듯, 그와 그의 집안은 왕실과 빈번히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門地가 높았고, 그의 부계 직계 조상들 중에서도 大臣級 인물을 다수 찾을 수 있다. 부계 이외의 계보로 이어지는 여러 성관들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문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家系別로 대표관직(품계)과 거주지를 정리하면 〈부표 2〉와 같다. 〈부표 2〉에 나타나는 12개의 가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직의 高下와 거주지 또는 世葬地의 분포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계별 관직의 고하를 중심으로 한 관료 배출 양상을 가계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앞 장 〈표 2〉의 번호를 기준으로 ①번 가계는 송희업의 친가인 여산송씨이다. 여산의 향리로서 진사가 되어 免鄉한 송유익을 시조로 하고 있는데, 대대로 戶長을 지내다가 처음으로 출사한 인물은 淑文이다. 이후 7세손인 宋仁蕃부터 조선조에 출사하였는데, 당상관을 연이어 배출하고 있으며 부진한 경우에도 參下官에 그친 경우는 없을 정도로 家勢를 유지하였다.

②번 가계는 ‘璿源 全州李氏’이며, 송희업의 증조모 정순옹주의 부계 조상들이다. ‘선원’이라는 말대로 중종에서 태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대 조선국왕들의 가계이므로, 관직 진출의 양상이나 문벌의 수준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다만 태조 이전의 조상들이 대체로 武官이었고, 고려중기 이전에는 호장을 지낸 경우도 보인다. 翼祖 李行里의 부인 최씨(정숙왕후)가 호장 基烈의 딸인 것도 향리층에서 성장한 가계의 이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신라 司空을 지냈다고 전해지는 시조 翰 이후 초기 가계의 경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료적 근거가 족보 이외에는 희박함을 감안하면, 전주이씨의 先系도 향리에서 發身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산

송씨와 공통점이기도 한다.

③번 가계는 동래정씨인데, 송희업의 친조모 東萊鄭氏의 직계 조상들이다. 고려 시대 이전은 꾸준히 중앙관인을 역임했으나 고려 초중기 인물로 보이는 시조 繪紋 이후 3대까지는 호장으로서 東萊에 거주하면 묘소도 그곳에 두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3세손 文道가 登科하면서 향리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산송씨부터 전주이씨, 동래정씨까지 3개의 가계가 연이어 향리 시조를 둔 것으로 흥미롭다. 송희업의 친조모의 부친 鄭大年이 종1품 의정부 좌찬성까지 오른 재상급 인물이고 태종대 처음 출사한 矩가 또한 좌찬성을 지냈지만, 그 중간 세대에서는 정8과 종8품의 품계에 그친 인물이 둘이나 나타나는 등 비교적 부진한 편이었다. 이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근거지에 있어서 지방사족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조선 개국 직전 인물인 良生의 妻는 順興安氏인데 그 증조부 碩은 順興의 호장이었다. 처가의 영향인지 양생의 묘소도 순흥에 소재한다. 반면에 그 아들인 矩는 당시의 巨族⁴⁶⁾이라 할 수 있는 파평윤씨와 혼인하여 크게 현달하였다. 그런데 구의 아들 善卿은 星州李氏와 혼인하여 이후 3대에 걸쳐 장지를 경상도 星州에 두었다. 그래서인지 관직이 침체하다가 선경의 현손 荃이 경기 광주로 장지를 옮기면서 다시 크게 현달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④번 가계는 ‘忠貞公夫人 全州李氏’로 송희업의 외증조모 중 한 사람(아버지의 외조모)인 전주이씨의 직계 조상들이다. 충정공은 동래정씨 가계에서 나왔던 정대년이며 그 부인인 전주이씨는 효녕대군 補의 5대손이자, 태종의 6대손이다. 따라서 효녕대군의 아들 寶城君 俗부터 정대년 처의 조부 楊麓正 粹까지는 종친으로서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종친으로서 그에 따른 봉작만을 받았다. 국왕으로부터 5대손이 되는 李仁弘은 관직에 나아가 정3품으로 종묘서령을 지냈다.

⑤번 가계는 ‘贈礪輿郡夫人 光州金氏’인데 송희업의 모친이며 宋圻의 처가 되는 광주김씨의 부계 직계 조상들이다. 신라 왕자 김홍광을 시조로 하기는 하지만, 실

46) 조선전기 ‘巨族’의 기준과 구성에 대해서는 李泰鎮, 1976 「15世紀 後半期의 「鉅族」과 名族意識 -『東國輿地勝覽』人物條의 分析을 통하여-」『韓國史論』3 참조.

질적으로 정확한 계보가 전해지는 인물은 朱永이 처음이다. 이후 8세손 鼎까지는 고려시대 인물인데, 대체로 중앙관인을 지낸 것으로 나오지만, 4세 磉의 妻 綾城曹氏의 증조와 고조가 호장이고, 5세 士元의 처는 순흥안씨 安珦의 딸이고 고조부가 보승별장 安子美라서 역시 항리가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9세 若采부터 조선조에 출사하는데, 10세 間이 종9품 참하관이고 鐵山이 정6품 참상관인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당상관을 배출하는 官歷을 보여주고 있다.

⑥번 가계는 ‘平靖公夫人 全州李氏’는 김극핍의 처이며, 송희업에게 외증조모 중 한 사람(모친의 외조모)이다. 그는 효녕대군의 현손이며 誼城君 宋의 증손이다. 앞서 나온 정대년의 처 전주이씨와는 9촌간이 된다. 효녕대군까지의 모든 직계조상이 종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봉작을 받았을 뿐이다.

⑦번 가계는 ‘金大司諫夫人 全州李氏’이다. 전주이씨는 金弘胤의 처로서 송희업에게는 외조모가 된다. 이 가계도 효녕대군의 아들 의성군 宋의 후손으로서 김홍윤의 처는 효녕대군의 7대손이며, 宋의 6대손이다. 앞서 나온 김극핍의 처는 김홍윤의 처에게 증조부 항렬이 되며 촌수로는 9촌간이 된다. 김홍윤 처의 조부 昌仁부터 관직에 나갔는데, 참상관에 그쳤다.

⑧번 가계는 ‘李判官室 平海孫氏’이다. 평해손씨는 南原府判官 李淑의 처로 송희업에게는 외증조모(모친의 외조부)가 된다. 평해손씨의 조부 孫舜孝가 의정부 좌찬성으로서 현달한 것은 맞지만 다른 가계에 비하여 재경관인으로서 부진한 면도 보인다. 시조로 파악된 仁良이 조선조에 처음 출사한 것으로 보이는 密의 고조일 정도로 계보 파악의 범위가 깊지 못하였다. 부친과 증조부가 각각 현감과 군수에 그쳤다.

⑨번 가계부터 송희업의 처가쪽으로 이어진다. ⑨번 가계 ‘前室 咸陽呂氏’는 송희업의 전처 咸陽呂氏의 선계이다. 저명한 인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의 관료 가문으로 그 지위를 꾸준히 유지했다. 족보상 고려시대부터 꾸준히 중앙관인으로 나오는데, 조선조에 출사한 것으로 보이는 10세 稱부터 송희업의 妻父 祐吉에 이르기까지 재상급 인물은 없으나 참상관 이상의 관직을 놓치지 않았다.

⑩번 가계 ‘呂監司夫人 泗川睦氏’는 송희업의 妻母로서 呂祐吉의 妻이다. 그 가

계는 고려시대에 이미 중앙관료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선조에 출사하여 호조참판을 지낸 7세 進恭 이후로 당상관을 배출하지는 못하지만 3~4품의 품계를 유지하였다.

⑪번 가계 ‘後室 新平李氏’는 송희업의 후처 신평이씨의 가계이다. 시조가 신평현 호장으로 나타나며, 조선조 이후로는 주로 무관직을 역임하는 양상을 보이며, 당상관 이상으로의 진출은 부진한 편이다.

⑫번 가계 ‘李庶尹室 延日鄭氏’는 송희업의 두 번째 妻母로서 李景恒의 妻이다. 중시조에 해당하는 宜卿은 호장이고, 고려시대에는 중앙관인으로 나타나다가 조선조로 들어오면 들어온 직후인 8세 淵과 9세 自源이 당상관에 오른 이후 대신급 인물은 없으나 관료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었다. 8세 淵의 처 단양우씨의 외조부는 고려 공양왕이며, 11세 龜寧은 종실 전주이씨(惠寧君의 증손)와 혼인한 것이 주목된다. 14세 涉의 처조부이자 이경항의 처외증조부는 默齋 李文健(1494~1567)이다.

이상의 가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가계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참상관 이상의 양반 관료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당상관 이상 대신급 관료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송희업의 처가 계통 가계들은 상대적으로 직계 조상 가계들에 비하여 고위 관직 진출이 부진한 경향이 있다. 이는 종실과 빈번히 혼인할 정도로 門地가 높았던 선대에 비하여 송희업의 세대에 이르러 가문의 성세가 약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처가쪽 성관인 사천목씨, 함양여씨, 신평이씨는 다른 성관에 비하여 大姓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특징적이다.

둘째는 빈번한 宗室과의 혼인관계이다. ②번 선원 전주이씨는 옹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 경우이고, 넷째, ⑥번과 ⑦번 가계도 전주이씨인데 국왕으로부터 몇 세대 내려와 이제 겨우 親盡할 무렵의 인물로서 비교적 국왕의 근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두 孝寧大君의 후손인 것이 특색이다.

셋째, 조선시대 이전의 가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대에 걸쳐 관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지만, 가계의 시작점, 즉 시조나 시조에 가까운 조상들 중에는 지방 향리 출신이 다수 나온다. 이것은 당시 지배층의 연원이, ‘鄉吏의 士族

‘化’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은 내외조상 중 어느 쪽으로 소급해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수록 인물의 지역적 분포이다. 거주지는 일단 계보자료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묘소 위치를 기본 자료로 추정하였다. 묘소는 대체로 생활근거지 주변에 자리 잡기 마련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묘역에 世葬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의 출신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⁴⁷⁾ 다만 묘소는 거주공간과는 입지조건상 차이가 있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인물인 경우 장지는 경기 일대 여러 군현으로 흩어져 분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묘소 위치만으로 근거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묘소 위치를 기본 자료로 근거 지역을 추정하되, 大小科 방목에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확실한 거주지 정보로 파악하였다.

①번 가계인 여산송씨는 시조의 묘소가 磺山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에는 長湍, 조선 개국 이후로는 꾸준히 楊州에 묘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성 내에 사대부의 묘소를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서울 인근 고을(양주, 광주, 고양, 과천 등)에 世葬地를 둔 가계는 대개 서울 거주자로 볼 수 있다. 방목으로 거주지가 확인되는 송희업의 부친 宋圻의 거주지는 서울로 명시되어 있다.⁴⁸⁾

다만 14세기 중후반에 생존한 것으로 보이는 仁蕃⁴⁹⁾과 그 아들 祉의 묘소는 각각 충청도 連山과 전라도 泰仁에 있어서 생활권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던 조선전기까지 사족들이 妻家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배우자를 주목하지 않을 수

47) 조선전기까지는 외가나 처가의 근거지에 葬地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가 17세기 이후 점차 父系의 族葬地로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서, 2008 「조선전기의 장지(葬地) 결정 요인과 조선후기 ‘족장지(族葬地)’의 형성」『역사와 경계』 66 참조.

48) 송기는 선조 16년(1583) 癸未 別試 丙科 25위로 급제했으며, 거주지는 京으로 되어 있다. (이하 방목 검색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참조)

49) 그 부친 宋瑞의 생몰년이 1278년(충렬왕 4)~1353년(공민왕 2)이다.

없다. 仁蕃의 처와 모친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지만, 祀의 배우자는 古阜李氏이고 묘소도 인근지역인 古阜에 소재하고 있어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②번 가계인 璞源 전주이씨의 묘소 위치는 곧 조선왕릉의 위치이기 때문에 廣州, 高陽, 楊州, 驪州 등 서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왕릉의 입지조건상 당연한 현상이지만, 본고에서 다루어질 다수의 在京士族들의 묘소가 소재한 군현도 왕릉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주목된다. 그리고 국왕으로 추존된 태조의 직계 4대, 穆祖, 翼祖, 度祖, 桓祖의 묘소는 모두 함경도 지역에 있으며, 그보다 선대의 묘소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번 동래정씨의 묘소 위치의 추이는 앞서 관료로서의 출세 여부를 논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 가계도 중앙관인이면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④번 전주이씨 정대년 처가의 묘소 위치는 果川, 紗川, 楊州, 廣州 등으로 전형적인 재경사족의 장지 분포 양상을 보인다. 국왕의 지친으로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⑤번 광주김씨의 선대 묘소는 고려시대에 豊德과 春川이 나타나고, 조선왕조 들어와서는 楊州와 長湍에 이어, 10세 間의 처 양천허씨의 묘소가 충청도 連山이었던 데 이어서 그 아들 鐵山, 손자 謙光의 묘소가 연이어 연산에 소재하고 있어서 역시 지방으로의 생활권 이동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겸광은 의정부 좌찬성에까지 오른 인물임에도 지방에 묻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13세 克愬 이후로는 다시 서울 근교인 양주로 장지가 이동한다. 송기의 장인이자 송희업의 외조부인 흥윤의 거주지는 방목에 따르면 서울로 확인된다.

⑥번 김극립 처 전주이씨의 선대 묘소는 楊州와 抱川이다. 같은 전주이씨인 ⑦번 김홍윤 처 전주이씨의 선대 묘소는 抱川이다.

⑧번 평해손씨의 선대 묘소는 조선시대에는 모두 충주이고, 시조 인량은 평해에 있는 것으로 전한다.

⑨번 함양여씨의 선대 묘소 분포도 富平, 高陽, 廣州 등 서울 인근 지역을 떠나지 않으며, 15세 世璫과 18세 祐吉은 방목에 따르면⁵⁰⁾ 거주지가 서울로 나타난다.

⑩번 사천목씨의 선대 묘소는 고려시대에 信川과 長湍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는 거의 楊州를 세장지로 하였다.

⑪번 신평이씨의 선대 묘소의 분포 양상은 麗末鮮初 아래로 충청도 沔川, 結城, 洪州 일대에 분포해 있는 특색이 있다. 그러다가 송희업의 처조부인 文殷부터 서울 인근인 果川을 묘소로 하고 있으며, 송희업의 처부 景恒은 방목에 거주지가 서울로 나온다.⁵¹⁾

⑫번 연일정씨는 초기 계보에 묘소가 迎日로 나오고, 고려말에 開城, 坡州에 장지를 두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交河에 꾸준히 세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지역적 분포를 종합해 보면 조선시대 인물의 경우 거의 서울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주, 광주, 고양, 포천, 과천, 금천 등의 고을이 그러한 지역이다. 또 고려시대로 소급하면 장단, 풍덕 등 개성 인근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王京에 거주하며 그 인근에 장지를 두는 중앙관료층의 오랜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다만, 『십이세계』에서 다루어진 인물이 대다수가 중앙관인임에도 일부 인물의 거주지가 서울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충청도 연산, 전라도 태안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데, 2~3세대만에 다시 경기지역으로 장지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관인의 落鄉과 鄉居 지향 또는 향촌사족과의 혼인에 따라 거주지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십이세계』가 지역적으로 서울 주변에 거주하는 중앙관인의 가계를 망라하고 있는 것은 조선전기의 대표적 족보인 『安東權氏成化譜』(1476년)나 『文化柳氏嘉靖

50) 1522년(중종 17) 式年試 생원 2등 22위로 입격

51) 1588년(선조 21) 式年試 생원 3등 58위로 입격

52) 고려 墓誌銘의 출토지 대부분은 개성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金龍善, 1997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출판부). 또한 태종대에는 사현부에서 2품 이상으로서 외방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죄를 청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7월 己丑) 여기서 거론된 2품 이상의 관료는 모두 實職이 아닌 檢校職이나 전직 관료였다. 정해진 직무가 없어도 일정 품계 이상의 관료를 지낸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譜』(1565년)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며,⁵³⁾ 영남 사족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고성이씨 『四姓綱目』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⁵⁴⁾ 『십이세계』와 『사성강목』 사이의 혈연·혼인관계망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좀더 천착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십이세계』에서 충청도, 전라도 등 먼 지역에 장지가 존재하는 사례는, 중앙관인과 지방사족 사이에 부분적으로나마 혼인관계의 연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사족의 중앙진출 또는 중앙관인의 낙향 등의 요소는 전국적인 혼인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맺음말

조선시대 족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성씨와 본관을 같이하는 同族을 시조에 서부터 편찬 당시의 자손까지 망라해 놓은 것이지만,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편집방식과 기능을 가진 가계기록도 편찬되었다. 17세기의 사족 송희업이 편찬한 『여산송씨십이세계』도 그러한 개인적인 가계기록 중 하나로서, 편찬자 송희업의 직계 조상들을 12개 家系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각각의 가계는 내외 조상 중 한 사람에서부터 그 성씨의 시조에까지 이르는 ‘가첩’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가첩의 가계들을 모아보면 송희업의 팔고조도에 해당하는 내외조상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조선전기 가계기록에서 잘 나타나는 다원적 혈연관념을 잘 보여준다.

53) 『성화보』와 『가정보』에 수록된 문과급제자 수는 2,000명이 넘는데, 이것은 조선초부터 『가정보』가 간행된 명종 말에 이르는 문과급제자 총수의 60%가 넘는다고 한다(에드워드 와 그너 지음, 이훈상·손숙경 옮김,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41~244면).

54) 『사성강목』의 편찬자 李魯는 경상도 의령군에 살던 인물이며, 이 가계기록에는 진주·합천·고령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南冥學派에 속했던 인사들이 거의 등재되었다고 한다.(『四姓綱目·春坡心易』, 경남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영인본, 2002, 경남문화자료총서 1. 원창애 解題 :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研究』 71 : 이수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 출판부, 2003)

『십이세계』는 혈연관계의 다양성 못지않게 성씨별 족보의 편찬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송희업은 『십이세계』를 편집할 무렵에 친가인 여산송씨의 족보와 외가인 광산김씨의 족보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성관은 모두 『십이세계』의 12개 가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송희업은 평소 수집한 계보관련 자료를 성씨별 족보의 편찬에도 적극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성씨별 족보를 편찬하면서 異姓의 계보는 대거 삭제되는 한편, 同姓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역적 거리와 사회적 지위의 몰락 등으로 교류가 적었던 부류들까지도 ‘追錄’ 등의 특례조치를 통해서까지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적 가계기록과 성씨별 족보를 비교해 보면, 혈연적으로 동성 중심으로 축소되었지만, 사회계층적으로 지방의 한미한 사족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십이세계』의 혈연관념은 매우 다원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록된 인물의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범위의 다양성은 그리 크지 못하다. 편찬자 송희업은 관료로서 크게 출세한 인물은 아니지만, 왕실과 혼인이 가능할 정도의 門地를 갖추었고, 당시의 중앙관인총 전반에 폭넓은 인맥을 누대에 걸쳐서 쌓아오고 있었다. 그는 서첩 수첩에 힘쓰는 장서가로서의 성향이 강했고, 여러 집안의 족보에 능통한 보학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12개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계도 있었다. 계보에 포함된 대부분의 인물이 중앙관인총에 속하며, 간혹 선대 계보에서 지방에 근거를 둔 인물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대개 경기 지역을 世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는 데서 드러나듯, 이른바 사회적·지역적 ‘동류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앙관인총의 동류의식을 목적으로 가계기록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십이세계』 말미에 첨부된 標目이다. 이 방목은 수록 인물들이 급제한 해당 시험의 합격자를 모두 실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세종대부터 선조대에 이르고 있어 여러 세대에 걸친 관료 가계의 인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非同類 계층과의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세계의 最先代 인물들이 향리인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보인다. 최상층 양반이라 할지라도 선대

가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士族과 吏族의 分岐가 일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내외조상을 망라하는 『십이세계』의 계보적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부계 뿐 아니라 어느 계통으로 소급해도 향리 조상을 만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묘소와 방목상 거주지를 통해 미루어 본 생활 근거지를 보면,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鄉居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 있으며, 정황상 향촌사족과의 혼인으로 인한 낙향으로 해석할 여지도 보인다. 본고는 在京官人 위주의 혈연 및 혼인네트워크에 놓여 있는 인물의 가계기록만을 분석한 한계가 있지만, 고성이씨 『四姓綱目』의 경우와 같이 향촌사족을 다수 포함하는 가계기록과 비교해 본다면, 중앙관인의 혈연관계망이 완전히 ‘닫힌’ 것만은 아니었음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논문투고일(2016. 4. 30), 심사일(2016. 5. 27), 게재확정일(2016. 6. 13)

참고문헌

- 『礪山宋氏十二世系』(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套 7781)
- 『礪山宋氏世譜』(1664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518-39-67)
- 『安東權氏世譜(後甲寅譜)』(1794년, 필자 보유 사본)
- 『四姓綱目·春坡心易』(경남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영인본, 2002, 경남문화자료총서 1)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 金萬基, 『瑞石先生集』
- 宋時烈, 『宋子大全』
- 朴鼎賢, 『凝川日錄』
- 李植, 『澤堂集』
- 鄭賜湖, 『禾谷集』

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ck.history.go.kr>)

승정원일기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문집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방목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권기석, 2011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태학사
金龍善, 1997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출판부

宋俊浩, 1987 『朝鮮社會史研究-朝鮮社會의 構造와 性格 및 그 變遷에 관한 研究-』, 일조각
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손숙경 옮김,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이수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 출판부,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웹서비스 : <http://terms.naver.com>)

權奇奭, 2010 「조선시대 族譜의 入錄階層 확대와 한계-凡例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55

박홍갑, 2010 「고성이씨 족보 간행과 그 특징」『고성이씨 가문의 인물과 활동』, 일지사
成鳳鉉, 2004 「固城李氏『先世外家族譜』와『八高祖圖』檢討」『古文書研究』 24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大東文化研究』 71

이종서, 2008 「조선전기의 장지(葬地) 결정 요인과 조선후기 '족장지(族葬地)'의 형
성」『역사와 경계』 66

李泰鎮, 1976 「15世紀 後半期의 「鉅族」과 名族意識 -『東國輿地勝覽』 人物條의 分析
을 통하여-」『韓國史論』 3

Abstract

The Pluralistic Kinship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Network of
Yǒsan Songssi Sibi Segye, Twelve Family Lines of
Yǒsan Song Lineage

Kwon Ki-seok

Yǒsan Songssi Sibi Segye is a ego-oriented genealogy record compiled by Song Hui-ǒp,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17th century. twelve family lines are consisted of the lineal ancestors of the compiler Song's eight great-grandparents and four patents-in-law. This editing method reflect the bilateral kinship consciousness that genealogy books expressed in the early Chosǒn period.

The compiler also participated in editing of genealogy books of Yǒsan Song and Kwangju Kim lineages. These genealogy books for only one family name excluded the descendants who had other family names, while including the rural and inferior descendants so long as they had the common patrilineal progenitor.

In contrast, *Sibi Segye* was compiled on the basis of the pluralistic kinship, and recorded people had regional and hierarchical uniformity. The compiler Song was descended from the noble family enough to intermarry with the royal family, and made more personal connections in the bureaucrat socie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social status of the compiler enabled him to become a master of genealogy and to edit different types of genealogical records.

Key words : genealogy records, genealogy book (族譜, *chokbo*), Yǒsan Song lineage, *p'alkojodo* (八高祖圖, genealogy table of eight great-great-grandfathers),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rural gentry

〈부표 1〉

1664년본 『礪山宋氏世譜』 수보 참여 주요 인물의 계보도

* 범례 : ○안의 숫자는 시조후 代數



<부표 2>

『십이세계』 수록 인물의 대표 관직 및 거주지

* 일러두기 :

- 贈職이 아닌 實職을 기재함
- 君號 등 封爵은 생략
- [] 표시는 해당 성관의 죽보에서 찾아 보충해 넣은 정보

성관명	대수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 磺山宋氏	이름	宋熙業	圻	惟毅	寅	之翰	軼	恭孫	萬達	辰生	祉	仁蕃	瑞	玢	松禮	希植	淑文	惟翊
	품계		折衝將軍 (정3)	宣教郎 (종6) 儀賓階 부마)	奉憲大夫 (정2, 儀賓階 부마)	折衝將軍 (정3)	大匡輔國崇祿大夫 (정1)	折衝將軍 (정3)	通訓大夫 (종3)	中直大夫 (종3)	中訓大夫 (종3)	奉翊大夫 (종2)	壁上三韓三重 大臣 (정1)	壁上三韓三重 大臣 (정1)	壁上三韓三重 大臣 (정1)			
	대표관직	掌樂院 僉正 (종4)	僉知中樞府事 (정3)	敦寧府 奉事 (종8)	五衛都 摠府 都摠管 (정2)	僉知中樞府事 兼五衛將 (정3)	議政府 領議政 (정1)	義興衛 護軍 兼訓練院 都正 (정3)	慶源都 護府使 (종3)	內資寺 少尹 (정3)	書雲觀 正 (정3)	判司僕 寺事 (종3)	都僉議 右政丞 (종1)	都僉議 使司 中贊 (종1)	都僉議 使司 中贊 (종1)	三宰(知 門下省 事)	政堂文 學 (종2)	進士 (免鄉)
	묘소 위치 (거주지)		楊州 (서울)	楊州	楊州	楊州	楊州	楊州	楊州 전설 묘소는 廣州	楊州 (전로현), 妻의 묘소는 古阜	泰仁 (충청도)	連山 (충청도)	長湍	長湍	長湍	미상	미상	磧山
	비고	편찬자		貞順翁 主 (중종 3女)와 혼인	南袞의 딸과 혼인	炳忠奮 義靖國 功臣, 양성지 순녀와 혼인			조선 조애 출사	妻는 古阜李 氏				개성 에서 사망	대대로 호장을 지내 다가 처음 출사			

	대수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6	1
2. 璞源 全州 古完山	이름	貞順翁 主 (宋寅 妻),	中宗 (憚)	成宗 (妾)	德宗 (暲)	世祖 (琢)	世宗 (禡)	太宗 (芳遠)	太祖 (旦, 成桂)	桓祖 (子春)	度祖 (椿)	翼祖 (行里)	穆祖 (安社)	陽茂	麟	勇夫	宮進	世珍	兢休	翰
	대표관직		국왕	국왕	국왕 (추존)	국왕	국왕	국왕	국왕	문하 시중			知宜州	將軍	內侍執 奏 大將軍	大將軍	戶長	追封戶 長	처음 고려에 출사	신라 司空
	품계																			
	묘소 위치	楊州	廣州 (靖陵)	廣州 (宣陵)	高陽(敬陵)	光陵 (楊州)	驪州 (英陵)	廣州 (獻陵)	楊州 (建元 陵)	咸興 (定陵)	咸興 (義陵)	安邊 (智陵)	咸興 (德陵)							
비고														부인 정숙 왕후 최씨는 호장 基烈의 딸				7~12 세 생략 (필자)	2~5세 생략 (필자)	

	대수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성명	東萊鄭氏(宋惟毅妻)	大年	荃	元耘	柅	善卿	矩	良生	瑚	惟義	筠	承宗	輔	子家	澤	穆	文道	之遠	繪紋	
품계		崇政大夫(종1)	通仕郎(정8)	定略將軍(종4)	修義副尉(종8)			重大匡(종1)	監察大夫(정3)	奉順大夫										
3. 贈壺山君夫人 東萊鄭氏	대표관직	議政府左贊成(종1)	藝文館待敎(정8)	忠武衛副司直(종5)	忠佐衛副司正(종7)	戶曹佐郎(정6)	議政府左贊成(종1)		密直	判都津寺事	太府少卿(종4)	守平宮錄事	校書郎(정9)	典獄令	門下僉議贊成事(정2)	尙書左僕射(정2)	戶長甫尹	戶長甫尹	戶長甫尹	
묘소 위치 (거주지)	楊州	廣州(서울)	廣州	星州	星州	星州		順興									東萊			
비고				부인 永川崔氏는 부친 이름만 기재	부인 여주이씨의 외조가 양녕대군 禔	妻 星州李氏	태종대 출사, 妻 파평윤 씨는 당대의 巨族	妻 순홍안 씨의 증조 碩은 호장								3子 登科		동래현 거주 (居鄉 鄉任)		

	대수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8)	(1)
성명	光州金氏(宋圻妻)	弘胤	克福	謙光	鐵山	問	若采	鼎	英利	稹	士元	璉	大鱗	光存	朱永	義元	興光	
품계	嘉善大夫(종2)	崇政大夫(종1)	正憲大夫(정2)	承議郎(정6)		資憲大夫(정2)	重大匡(종1)	通議大夫(정4)	匡靖大夫(종2)	三重大匡(정1)	匡靖大夫(종2)	金紫光祿大夫(정2)				신라왕자		
5. 贈礪興君夫人 光州金氏	대표 관직	司憲府 大司憲	議政府 左贊成	議政府 監察(정2)	司憲府 監察(정6)	藝文館 檢閱(정9)	忠清道 觀察黜陟使		判軍器 監事	政堂文學(정2)	僉議贊 成事(정2)	僉議侍 郎贊成 事(정2)	門下侍 中平章 事(종1)	興威衛 別將同 正(정7)	金吾衛 中郎將 同正(정5) 隊正(종9)	平章		
※송희업이 해당 성관의 죽보 편찬에 참여(1677년, 金萬基 서문)	묘소 위치 (거주지)	楊州 (서울)	楊州	連山	連山	長湍	楊州 (豐壤)	[春川]		[豐德]					[長湍] ⁵⁵⁾			
	비고		妻는 把城君 哲全의 딸			妻 陽川許 氏의 묘소는 連山	조선에 출사	고려에 출사		妻 福州權 氏의 외조는 上洛公 金方慶	順興安 氏 安珦의 딸, 고조부 는 保勝別 將 子美	綾城曹 氏의 증조와 고조는 戶長, 외조는 貞州鄭 氏	妻가 같은 光州金 氏이며 호장 俊齡의 딸			義元부 터 朱永까 지 몇 세대 미상	난리가 있을 것을 예지하 고 光州에 복거 (2)~(7) 세대 생략(필 자)	

6. 平靖公夫人 全州李氏	대수	4(28)	3(27)	2(26)	1(25)	(24)
	성명	全州李氏(金克福妻)	哲全	福	案	孝寧大君(補)
	품계	貞敬夫人	中義大夫(종2, 종친)	明善大夫(정3, 종친)	顯祿大夫(정1, 종친)	
	대표 관직					
	묘소 위치	楊州	楊州	楊州	抱川	
	비고					계보 4. 참조

55) 묘지명 남아 있음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133~136면)

7. 金大司諫夫人 全州李氏	대수	7(31)	6(30)	5(29)	4(28)	3(27)	2(26)	1(25)	(24)
	성명	全州李氏 (金弘胤妻)	淑	昌仁	承元	任	性	宋	孝寧大君 補
	품계	貞夫人	通訓大夫 (정3下)	彰信校尉(종5)	通訓大夫(종2)	正義大夫(정2, 종친)	正義大夫(정2, 종친)		
	대표 관직		南原府判官 (종5)	龍驤衛 副司直 (종5)	晉州牧使				
	묘소 위치	楊州	抱川	抱川	抱川	抱川	抱川		
	비고			妻의 조부는 尹塽	妻의 조부가 韓確		妻 驪與閔氏의 조부가 閔無咎 (태종의 처남)	계보 6. 참조	

8. 李判官室 平海孫氏	대수	8	7	6	5	4	3	2	1
	성명	平海孫氏 (李淑妻)	濬	舜孝	密	有禮	永	得寶	仁良
	품계		朝散大夫 (종4)	崇政大夫 (종1)					
	대표 관직		通津縣監	議政府 左贊成(종1)	旌善郡守 (종4)	郎將 (정6)	都官直郎		
	묘소 위치		[忠州]	忠州	[忠州]	[忠州]			[平海]
	비고		처는 長興馬氏, 처외조는 淳昌薛氏			처는 體泉尹氏	[족보에는 이름이 得富]	[족보에는 이름이 仁亮]	

	대수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성명	咸陽呂氏(宋熙業妻)	祐吉	順元	淑	世琛	允秀	忠輔	宗肅	稽	稱	吉孫	公孫	克諧	文和	渭璜	尙輔	子章	林淸	御梅	
품계		通政大夫 (정3上)	折衝將軍 (정3上)	進勇校尉 (정6)	通訓大夫 (정3下)	通訓大夫 (정3下)	通訓大夫 (정3下)			資憲大夫 (정2)		奉翊大夫 (종2)		朝奉大夫 (종4)	金紫光祿大夫 (정2)	銀青光祿大夫 (정3)		金紫光祿大夫 (정2)		
9. 前室 咸陽呂氏	대표관직	公洪道觀察使	僉知中樞府事		掌樂院僉正 (종4)	司贍司副正 (종3)	內資寺僉正 (종4)	唐津縣監 (종6)	戶曹佐郎 (정6)	都摠制府都摠制 (종7)	贍官署令 (종7)	密直副使	讞部議郎 (정4)	司僕尹	知門下省事 (종2)	尙書左僕射 (정2)		大將軍 (종3)	典書 (정3)	
묘소 위치 (거주지)		廣州 (서울)	廣州	[廣州]	[廣州] (서울)	[廣州]	[高陽]	[高陽]	[富平]	[開城]								咸陽		
비고					妻是全州黃氏		妻 성주이씨의 증조는 仁敏			'武科'	처는 文化柳氏 謙의 딸	'武科' 원문은 獻部이 나 오류	처는 遂安李氏	'武科'	'武科'	'武科' 라고만 기재	고려 인물인 에도 '武科' 라고 함			

	대수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성명	泗川睦氏 (呂祐吉 妻)	從賢	尙文	希曾	哲成	寶男	進恭	孫儉	忠達	君慶	俊平	德昌	孝基
	품계	貞夫人	朝散大夫 (종4)	中訓大夫 (종3)	奉列大夫 (정4)	通訓大夫 (정3下)	通訓大夫 (정3下)	嘉靖大夫 (종2)			中顯大夫 (종3)	朝奉大夫 (종4)	閣門祇候 (정7)	郎將同正 (정6)
10. 呂監司夫人 泗川睦氏	대표 관직		活人署 別提	抱川縣監 (종6)	司憲府監察 (종6)	禮賓寺僉正 (종4)	舒川郡守 (종4)	戶曹參判 (종2)	神虎衛 精勇郎將 (정6)	進士	興威衛 大護軍 (종3)	秘書尹 寶文閣直提 學(정4)		
	묘소 위치		[楊州]	[楊州]	[楊州]	[楊州]	[楊州]	[廣州]			[長湍]	[信川]		
	비고							조선조에 처음 출사. 처음으로 妻에 대한 기록 있음				고려 문종조에 영광군을 지키다 반적에게 사망(『고려 사』에 나옴)		

	대수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初祖]
11. 後室 新平李氏	성명	新平李氏(宋熙 業妻)	景恒	文殷	堯壽	世蘭	欽頤	宗孝	祥	坡	堯弼	挺	承柱	淑卿	秘	桓	德明	[仁壽]
	품계		通訓大夫 (정3下)	通訓大夫 (정3下)	秉節校尉 (종6)	禦侮將軍 (정3)	資憲大夫 (정2下)			典書 (정3)	文林郎 (종9)			正郎 (정5)	正郎 (정5)	靈光郡事 (종4)	平章 (정2)	
	대표관직		漢城府庶尹 (종4)	遂安郡守 (종4)		馬梁鎮僉節制使 (종3)	北道兵馬節度使 (종2)	兵使 (종2)	進士		知安州事	竹州監務	檢校軍器監 (종3)					[新平縣戶長]
	묘소 위치 (거주지)		果川 (서울)	[果川]	[洪州]	[結城]	[泗川]	[泗川]	[泗川]	[泗川]	[泗川]					[洪州]		
	비고		치조부 가 영의정 鄭光弼 (본관 東萊)	치는 昌原玄 氏, 외조는 종실	妻는 茂朱金 氏 [족보에 는 이름이 蘭]	妻는 陽川崔 氏 [족보에 는 이름이 欽石]	치는 扶寧金 氏			[족보에 는 광弼로 도 기재]	妻는 綾城具 氏 [종조는 存裕]		鄉貢文 科 제3					

	대수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미상	시조
12. 李庶尹室 延日鄭氏	성명	延日鄭氏 (李景恒妻)	涉	彥珪	瑄	龜寧	涵	自源	淵	洪	思道	侑	潤	均之	昌祐	克儒	宜卿	宗殷
	품계		通訓大夫 (정3下)	通訓大夫 (정3下)			通訓大夫 (정3下)	通政大夫 (정3上)	正憲大夫 (정2)			中顯大夫 (종3)	奉善大夫 (종4)					
	대표 관직		司饔院直長 (종7)	朔寧郡守 (종4)			司宰監僉正 (종4)	掌隸院判決事	兵曹判書 (정2)	知識政府事寶文閣提學 (정3)	政堂文學 (종2)	宗簿令 (종3)	讞部議郎知制誥 (정4)	檢校軍器監事 (종3)	判禮賓寺事 (정3)	縣監 (종6)	호장	
	묘소 위치		交河					〔交河〕	〔交河〕	〔坡州〕	〔開城〕				〔迎日〕			
	비고		조부가 李文健 (본관 星州)	처는 鐵原崔氏. 부친 承濬의 이름만 기재	처가 宗室 전주이씨, 증조는 惠寧君	처 삭녕최씨의 외조는 徐彌性		妻 丹陽禹氏의 외조는 공양왕, 증조는 禹玄寶				처는 仁川蔡氏 惟吉의 딸	처는 宜寧南氏及第 之卓의 딸		종은의 21세손	연일로 옮겨와 호장이됨	신라 때 간관이 있었는데, 言事로 仁同 若木縣 으로 이거	